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특정 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 강민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81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민국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9.
3. 회 부 일 : 2024. 9.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상 제재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 임원취임이 제한되고 있음.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제재조치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임직원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이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재직 중 이었다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지시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에게는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 및 그 내용에 대한 기록·유지 의무를 부과하며, 통보권한을 한국은행총재 등에게 위탁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3(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 이었다라면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1항

현행	개정안
	에 따른 통보를 하게 할 수 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지시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또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지시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면직·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가. 해임권고
-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다. 문책경고
- 라. 주의적 경고
- 마. 주의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가. 면직
-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 다. 감봉
- 라. 견책
- 마. 주의

□ 그런데, 현행법상 위반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퇴직을 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근거가 미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³⁾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퇴임·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으로서 조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제재조치 전 퇴임·퇴직한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제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금융관계법령⁴⁾과 달리, 이 법에는 퇴임·퇴직한 임직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보험업법」 제135조, 「은행법」 제54조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의2,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의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6조,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5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의2, 「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 제15조

□ 이에 개정안은 퇴임·퇴직한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지시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조치 내용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임직원이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금융사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 법을 위반한 퇴임·퇴직 임직원과 다른 법률을 위반한 퇴임·퇴직 임직원 간의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참고로,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는 「보험업법」 5), 「은행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8),

5) 「보험업법」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13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6) 「은행법」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57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상호저축은행법」 9) 등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11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9)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24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29조제1호·제3호·제4호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는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